

예 산 총 칙

2018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676,184,707	50,285,541
일반회계	1,457,755,394	43,732,662
특별회계	218,429,313	6,552,879
공기업특별회계	177,764,218	5,332,92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0,184,069	2,405,52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7,580,149	2,927,404
기타특별회계	40,665,095	1,219,953
주택사업특별회계	78,103	2,343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8,980,596	269,418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704,000	21,12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9,311,791	279,354
교통사업특별회계	18,998,858	569,966
대지보상특별회계	1,064,687	31,941
수질개선특별회계	1,527,060	45,812

제 2 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4 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5 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6 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250,000천원』 으로 한다.

제 7 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액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